

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임에도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법('99. 2. 8 법률 제5895호) 및 건축법시행령('99. 4. 30 대통령령 제16284호)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구청의 건축조례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 1999. 10. 1 공포 시행중에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이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(부칙)

3. 검토의견

- 1993. 6. 1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본 조례폐지안은,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임에도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하여 자치구의 조례는 폐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('99. 2. 8 법률 제5895호) 및 건축법시행령('99. 4. 30 대통령령 제16284호)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 '99. 10. 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.

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